

#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116
----------	-----

## 1. 제정목적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,
-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경감으로 교통량 감소 효과 유발

## 2. 주요내용

- 부담금의 면제(안 제3조)
  -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
  -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무인변전소, 소각장등 쓰레기처리시설물, 정수장, 하수처리장, 배수펌프장
- 단위부담금의 조정(안 제4조)
  -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: 1제곱미터당 500원
  -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: 1제곱미터당 350원
-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(안 제5조)
  -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이상인 시설물
  -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
- 부담금의 경감비율등(안 제6조)

## 3. 제정되지 않을시 문제점

-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교통량 감소 대책에 따라 교통량을 줄이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두어 자발적인 참여 유도 목적이나,
- 경감규정을 두지 않으면 차량10부제운행, 함께타기운동등의 효과를 보지 못하여 교통량 감소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제정준칙안 : 준칙안을 충실히 따름.

5. 검토의견

-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경우 주로 단지내 주민이 이용하여 교통량을 많이 유발한다고 볼수 없어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나, 총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만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그 이상인 아파트상가주민(8개소, 약 16개업소)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것으로 사료됨.
  
- 단위부담금의 조정은 기존에 1제곱미터당 35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규모가 큰 시설물(3천제곱미터이상이고 부설주차장규모가 10대이상인 시설물, 약80개소)에는 500원을 부과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것으로 예상되나,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  
-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거나 이에 따를 시설물, 업체가 몇 개소나 될지는 미지수로 판단되나 많은 업체가 참여할시 교통량 감소효과에 긍정적으로 판단됨.